



구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1891호 |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49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498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0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4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0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2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08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00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0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1

공 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11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체납·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21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13호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128

회 람								
-----	--	--	--	--	--	--	--	--

| 발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지로 95) | 편집: 미디어홍보실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49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1. 개정이유

가. 센터장 최초 임용 시 명시된 불합리한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연령 제한 없이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기존 규정상 이원화되어 있던 준용 법령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일원화하여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별도 조문으로 분리되어 있던 정년 규정을 임용 조항으로 흡수·통합함으로써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센터장 최초 임용 시 연령 제한(최초 임용일 현재 61세 미만) 규정 삭제
(안 제8조제3항)
- 나. 인사 관련 준용 법령 일원화 및 센터장 근무상한연령 예외 단서 신설
(안 제8조제4항)
- 다. 직원의 정년 규정을 제8조제4항으로 통합함에 따른 기존 조문 삭제
(안 제9조 삭제)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 자치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의견제출처

가) 주소: (우 22169) 인천광역시 독정리로 95, 미추홀구청 본관3층사 3층

자치협력과 주민협력팀(승의동)

나) 전화번호: 032-880-4396

4. 붙임

- 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나. 검토의견서 1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26 -
----------	--------

제출년월일 : 2026년 월 일

제출자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1. 개정이유

- 센터장 최초 임용 시 명시된 불합리한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연령 제한 없이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기존 규정상 이원화되어 있던 준용 법령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일원화하여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별도 조문으로 분리되어 있던 정년 규정을 임용 조항으로 흡수·통합함으로써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센터장 최초 임용 시 연령 제한(최초 임용일 현재 61세 미만) 규정 삭제
(안 제8조제3항)
- 인사 관련 준용 법령 일원화 및 센터장 근무상한연령 예외 단서 신설
(안 제8조제4항)
- 직원의 정년 규정을 제8조제4항으로 통합함에 따른 기존 조문 삭제
(안 제9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14.(월) ~ 10. 5.(월)

2) 입법선행절차

가) 행정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완료

다)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인권영향평가: 완료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를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1회 연임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직원의 임용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고, 신규임용 최저연령, 결격사유, 당연퇴직, 직권면직, 정년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2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직원의 임용) ①·② (생략)	제8조(직원의 임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장은 최초 임용일 현재 61세미만인 자로 하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1회 연임의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를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1회 연임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직원의 임용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고 결격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④ 직원의 임용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고, 신규임용 최저연령, 결격사유, 당연퇴직, 직권면직, 정년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⑤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 당연퇴직,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9조(정년)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삭 제>
제10조·제11조 (생략)	제9조·제10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13조·제14조 (생략)	제11조·제12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자치안전행정국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붙임 1

관련 법령(발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②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6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 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 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 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5.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의회의 의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도회의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2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센터의 장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직접 또는 민·관 혼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센터장의 임용연령과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의안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내 용	유	무
검토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498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개정이유

모바일소식지 운영 등 변화된 홍보환경을 반영하고, 소식지 발행 형태 및 운영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구독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소식지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호’를 ‘명칭’으로 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안 제2조)
- 나. 지면 중심의 발행 규정을 지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4조)
- 다. ‘구민’을 ‘독자’로 하여 소식지 참여 대상의 제한적 표현 변경(안 제5조)
- 라. 편집위원회 개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지면 소식지 발행 시로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회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11조)
- 마. 독자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기고 시 위원회 심의라는 절차적 제한 삭제(안 제14조)

바. 행사 참여 독자에게 상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독자 참여
활성화 및 소식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 미디어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우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송의동)

본관1청사 4층 미디어홍보실 홍보팀

(2) 연락처: 전화)032-880-4093, FAX) 032-880-4868

4. 붙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 -
----------	--------

제출년월일 : 2026. . .

제 출 인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1. 제안이유

모바일소식지 운영 등 변화된 홍보환경을 반영하고, 소식지 발행 형태 및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구독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소식지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호’를 ‘명칭’으로 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안 제2조)

나. 지면 중심의 발행 규정을 지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4조)

다. ‘구민’을 ‘독자’로 하여 소식지 참여 대상의 제한적 표현 변경(안 제5조)

라. 편집위원회 개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지면 소식지 발행 시로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회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11조)

마. 독자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기고 시 위원회 심의라는 절차적 제한 삭제(안 제14조)

바. 행사 참여 독자에게 상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독자 참여 활성화 및 소식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2026. 9월 중

2) 입법선행절차

가) 행정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실시예정

다) 성별영향평가: 실시예정

라) 인권영향평가: 실시예정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제호)”를 “(명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호는”을 “명칭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발행주기 등)”을 “(발행)”으로 한다.

제4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제4조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소식지의 판형을 변경하거나 특집호 등을 추가하여”를 “발행 횟수와 형태를 달리하거나 수시로”로 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독자 투고, 전문가 기고, 문예작품 등 소식지 독자의 참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소식지 발행 전 월 1회 개최하되”를 “지면 소식을 발행하는 달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로, “개최할”을 “개최하거나 생략할”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독자는 소식지에 게재된 행사에 응모할 수 있고, 기고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원고 및 주민기고”를 “원고”로, “수”를 “수 있으며, 행사에 응모한 독자에게는 추천 또는 선정을 통하여 상품을 지급할 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제호) <u>소식지의 제호는 “나이 스미추“(이하 “소식지“라 한다)로 한다.</u>	제2조(명칭) ----- <u>명칭은</u> ----- ----- --.
제4조(발행주기 등) <u>소식지는 매월 1회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u>소식지의 판형을 변경하거나 특집호 등을 추가하여</u> 발행할 수 있다.</u>	제4조(발행) <u>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u> ---- ----- <u>발행 횟수와 형태를 달리하거나 수시로</u> ---- -----.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u>구민이 참여하는 독자기고, 문예 작품 등</u> 5.·6. (생략)	제5조(게재사항) ----- -----. 1. ~ 3. (현행과 같음) 4. <u>독자 투고, 전문가 기고, 문예작품 등 소식지 독자의 참여에 관한 사항</u> 5.·6.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u>소식지 발행 전 월 1회 개최</u>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회의) ①----- <u>지면 소식지를 발행하는 달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u>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주민참여 등) ① <u>모든 구민도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u> ② (생략)	제14조(주민참여 등) ① <u>독자는 소식지에 게재된 행사에 응모할 수 있고, 기고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실비변상 등) ① (생 략) ②명예기자에게는 활동에 따른 일비를 지급하되, 명예기자가 제출한 <u>원고 및 주민기고</u> 중 소식지에 게재된 것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5조(실비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원고</u> ----- ----- ----- <u>수</u> 있으며, 행사에 응모한 독자에게는 추천 또는 선정을 통하여 상품을 지급할 수 ---. ③ (현행과 같음)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미디어홍보실		
의안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내 용	유	무
검토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0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개정이유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리포터의 활동 범위를 영상 제작에서 영상 콘텐츠의 제작 및 출연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활동으로 확대하고, 해촉기준을 정비하여 시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리포터의 정의 정비(안 제8조제2항)
- 나. 시민리포터의 활동범위 확대(안 제8조제4항제4호)
- 다. 시민리포터 해촉기준 정비(안 제8조제5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 미디어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1) 주 소: (우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송의동)
본관1청사 4층 미디어홍보실
- (2) 연락처: 전화)032-880-4092, FAX) 032-880-4868

4. 붙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 -
----------	--------

제출년월일 : 2026. . .

제 출 인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리포터의 활동 범위를 영상 제작에서 영상 콘텐츠의 제작 및 출연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 활동으로 확대
나. 해촉 기준을 정비하여 인력풀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시민리포터 정의를 정비함(안 제8조제2항)
- 주된 영상 제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영상 콘텐츠의 기획·제작 또는 리포터·출연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 나. 시민리포터의 활동 범위에 영상 콘텐츠 출연 업무를 추가함
(안 제8조제4항제4호 신설)
- 영상 콘텐츠 출연
- 다. 시민리포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해촉 기준을 정비함
(안 제8조제5항제1호)
- 1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 3개월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월 중

2) 입법선행절차

가) 행정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실시예정

다) 성별영향평가: 실시예정

라) 인권영향평가: 실시예정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구에서 주된 영상 제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리포터”를 “구청 홍보 및 구정 소식 전달을 위한 영상 콘텐츠의 기획·제작 또는 리포터·출연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1년”을 “3개월”로 한다.

4. 영상 콘텐츠 출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시민리포터) ① (생략)	제8조(시민리포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민리포터는 <u>구에서 주된 영상 제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리포터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u>	② ----- <u>구청 홍보 및 구정 소식 전달을 위한 영상 콘텐츠의 기획·제작 또는 리포터·출연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민리포터는 인터넷 방송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4. 영상 콘텐츠 출연</u>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⑤ 구청장은 시민리포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⑤ ----- -----.
1. <u>1년</u> 이상 제4항에 따른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1. <u>3개월</u>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

4. 작성자: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의안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내 용	유	무
검토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150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사 규칙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위원 조건 강화(안 제11조제1항)

- 공무원 채용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선정하도록 규정 강화

나. 면접시험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정비(안 제13조)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규정을 제3항에서 제2항으로 정비

다.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규정 삭제(안 제14조제1항)

- 자격증 가산을 강화하여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 가산 규정 삭제

라. 명칭 변경: 기술직→과학기술직(안 제19조제4항)

-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기술직군(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직렬)로 변경

마. 근무경력 가산점 규정 정비(안 제26조의2)

- 격무·기피 민원 담당 공무원 우대를 위한 가산점 신설(안 제3항)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 적용 유예기간 삭제(별표 17)

바. 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규정 신설(안 제30조의2)

-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한 전보·전출 예외 규정 신설

사. 근속승진기간 단축 규정 신설(안 제32조)

- 격무·기피 민원 담당 공무원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상 우대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아.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1호, 7호, 8호)

- 응시원서 상의 ‘탈모’ 용어 개정(별지 1호)
- 경력경쟁 블라인드 요소 강화(별지 7호, 8호)
 - 지방공무원 공채·경채 면접시험 평정표에서 생년 삭제

자. 응시요건(자격증) 등 정비(안 별표4, 별표5의 2, 별표6, 별표7, 별표7의 3, 별표7의 4, 별표9, 별표11, 별표17)

- 지적직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에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자격증과 “기능사” 삭제(별표4)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23, ‘24, ‘25)에 따른 자격증 통합 및 명칭 현행화(별표5의2, 별표6, 별표7, 별표7의 4)
-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응시가능한 사회복지·의료기술 직류의 경우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산 특전이 미적용됨에 따라 가산대상 자격증에 대한 규정을 삭제

- 명칭 변경: 기술직→과학기술직(별표7의 3, 별표9, 별표11)
- 격무·기피 민원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정비(별표17)

차. 부칙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 격무·기피 민원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 제출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총무과
- 주소: (우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송의동)
- 전화번호: 032-880-4117 (FAX: 032-880-4853)

4. 붙임

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나.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6 -
------------	--------

제출년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사 규칙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위원 조건 강화(안 제11조제1항)

- 공무원 채용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선정하도록 규정 강화

나. 면접시험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정비(안 제13조)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규정을 제3항에서 제2항으로 정비

다.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규정 삭제(안 제14조제1항)

- 자격증 가산을 강화하여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 가산 규정 삭제

라. 명칭 변경: 기술직→과학기술직(안 제19조제4항)

-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기술직군(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직렬)로 변경

마. 근무경력 가산점 규정 정비(안 제26조의2)

- 격무·기피 민원 담당 공무원 우대를 위한 가산점 신설(안 제3항)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 적용 유예기간 삭제(별표 17)

바. 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규정 신설(안 제30조의2)

-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한 전보·전출 예외 규정 신설

사. 근속승진기간 단축 규정 신설(안 제32조)

- 격무·기피 민원 담당 공무원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상 우대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아.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1호, 7호, 8호)

- 응시원서 상의 ‘탈모’ 용어 개정(별지 1호)

○ 경력경쟁 블라인드 요소 강화(별지 7호, 8호)

- 지방공무원 공채·경채 면접시험 평정표에서 생년 삭제

자. 응시요건(자격증) 등 정비(안 별표4, 별표5의 2, 별표6, 별표7, 별표7의 3, 별표7의 4, 별표9, 별표 11, 별표17)

○ 지적직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에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자격증 과 “기능사” 삭제(별표4)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23,'24,'25)에 따른 자격증 통합 및 명칭 현행화(별표5의2, 별 표6, 별표7, 별표7의 4)

○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응시가능한 사회복지·의료기술 직류의 경우 자격증 소지 에 따른 가산 특전이 미적용됨에 따라 가산대상 자격증에 대한 규정을 삭제

○ 명칭 변경: 기술직→과학기술직(별표7의 3, 별표9, 별표11)

○ 격무·기피 민원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정비(별표17)

차. 부칙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 격무·기피 민원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7, 제32조, 제33조의2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제25조의 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5조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026. 4 .3. 지방인사제도과-284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1) 입법예고: 2026. 9월 중

2) 입법선행절차

가) 행정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실시예정

다) 성별영향평가: 실시예정

라) 인권영향평가: 실시예정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4항 중 “기술직공무원”을 “과학기술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의2제3항 중 “업무”를 “업무 및 민원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업무”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전출제한기간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될 수 있다.

제32조를 제33조로 하고,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근속승진기간 단축) 영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7의 격무·기피 민원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은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2. 별표 17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은 근속승진기간을 2년 단축해야 한다.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3, 별표 7의4, 별표 9, 별표 11, 별표 1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7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가산점을 부여할 때 이 규칙 시행일 이전까지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격무·기피 민원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7의 격무·기피 민원 업무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평정부터 적용한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6조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데이터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
규입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
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2〕 <개정 2021. 3. 22., 2024.11.18., 2026.00.00.>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데 이 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제작~~ ,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설계~~ , 사출금형 ~~설계~~ ,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기술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 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 농업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 ~~기계정비~~ ,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제작~~ ,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설계~~ , 사출금형 ~~설계~~ ,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 농업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 선체설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선박기관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 ~~카카~~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 ~~계산기~~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전자 ~~계산기~~ 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 품질경영 기능사: 생산자동화자동화설비, 전자 ~~카카~~ , 전자 ~~계산기~~ 임베디드,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 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 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식품안전~~ ,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 ~~훼~~ 장식 기능사: 종자, 원예, 벼식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 ~~훼~~ 장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식품안전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어업 ,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 카카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식품안전 ,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계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적 측지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 설계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웹디자인개발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카카, 통신설비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카카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프로그래밍
조리	조리	기능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위생	사역	기능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전기, ~~기계정비~~ 설비보전, 조정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감정평가사(3)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2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2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데 이 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인사별리사(12) 법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위생사(12) 직업선생사(12) 원소속직(특수) 간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인사별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위생사(8) 직업선생사(8) 법사(일반)(3) 간독자(3) 임상심리사1급(3)	인사별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위생사(5) 직업선생사(5) 법사(일반) 간독자(3) 임상심리사2급(3)	인사별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위생사(2) 직업선생사(2) 임상심리사2급	인사별리사 법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직업선생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보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보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보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보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 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렬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21. 3. 22., 2026.00.00.>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 공 화 학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식품안전, 화학분석)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약사, 위생사(5)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직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농업연구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식품안전 ,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어업)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어업)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식품안전 ,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직류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기사(방재)
	재난관리			기사(방재)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기술사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식품안전 ,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어업 ,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 <개정 2021. 3. 22., 2026.00.00.>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테크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작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숙 기	숙 기	숙 기	한글숙기 1급	한글숙기 1·2급	한글숙기 1·2·3급
공 업	일반기계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장비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기계운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장비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톨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자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	산업기사(생산자동화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산기컴퓨터시스템, 전자계산기조 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질경영)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 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 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 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 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 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 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 영)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 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 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 전)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 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 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 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 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 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 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 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 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안전, 이화학제 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식품)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안전,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어 로				
	해양교통 시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	방 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응급구조사2급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학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학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제)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건축사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카카,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컴퓨터시스템,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직렬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협)	8·9급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 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운 전	운 전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카게 정비설비보전 , 토목, 건축설비, 건 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카게정비설비보전 , 조경)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의3] <개정 2021. 3. 22., 2026.00.00.>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4조 관련)

1. 행정직군 및 과학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과학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과학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별표 7의4] <개정 2021. 3. 22., 2024.11.18., 2026.00.00.>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법무행정		변 리 사
	재 경	-	변 호 사
	국제통상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산 업 기 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프로그래밍, 전자계산기, 임베디드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 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 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 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 (기계분야), 설비보전	
	농업기계		

공 업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선체설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선박기관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전기 기 능 장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기 사 :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기 능 사 :	

공업	전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자동화설비, 전자기, 전자계산기임베디드, 전자카드	
	원자력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유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학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원	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 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벼짓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 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안전,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 사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 사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 조경,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 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 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어업,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카카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카카,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보건교 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 사2급, 보건교육 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보건교 육사3급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 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안전 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 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방사선관리~~ ~~기사: 의공~~ ~~산업기사: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현의사, 치과 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 반), 방사선취급 감독자, 응급구 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치보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 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 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 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환 경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장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장수시설운영관리사2급 기능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장수시설운영관리사3급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개발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신기술	기 능 장 : 전자카카, 통신설비	
	전송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 전자카카, 통신카카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프로그래밍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설비보전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설비보전 ,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설비보전 , 조경	
------	------	---	--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설비보전~~	
농촌지도	농업기계 농업공학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카캐정비~~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카카~~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공업연구	금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학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리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작물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농작업물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원예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예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술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자동화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업연구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기 사 :	축산, 식품안전	
농촌지도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 경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촌지도	임 업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기 사 :	축산	
농촌지도	가축위생	산업기사 : 축산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수산자원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어촌지도	어 촌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술사 : 해양, 어로 어업,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안전 ,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 사 2급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 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 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 측정분석사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 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 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 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기사 : 방재	
	재난 관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9] <개정 2021. 3. 22., 2026.00.00.>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5조제4항 관련)

1. 과학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학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농 지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	수 의	수의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	일반해양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일반수산	
	일반선박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	항해(학)
	선박기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어 로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해양교통시설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지 적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	
방송통신	통 신 사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항 공	일반항공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 중	항공운항학
	정 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	약 무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별표 11] <개정 2026.00.00.>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과학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과학기술직렬 기준표(제19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 구 직		과 학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공업연구	기 계	공 업	일 반 기 계
			농 업 기 계
			기 계 운 전
	전 기		일 반 전 기
	전 자		전 자
	금 속		금 속
	섬 유		섬 유
	화 공		화 공
	화 학		
	물 리		-
농업연구	작 물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농 업 환 경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작 물 보 호	농 업	일 반 농 업
			식 물 검 역
	농 촌 지 도	농 촌 지 도	농 업
	농 업 경 영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농 업 경 영
	산 업 곤 충	농 촌 지 도	잠 업
	원 예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원 예

연 구 직		과 학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업연구	생 명 유 전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생 활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촌 사 회
			농 촌 생 활
	축 산	농 업	축 산
		농 촌 지 도	축 산
	농 공	공 업	농 업 기 계
		시 설	농 업 토 목
		농 촌 지 도	농 업 기 계
녹지연구	임 업	임 업	전 직 류
		농 촌 지 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수 의	수 의
해양수산연구	해 양 환 경	환 경	수 질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자 원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양 식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공 학	해 양 수 산	어 로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가 공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경 제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보건연구	의 학	의 무	일 반 의 무
			치 무
	약 학	약 무	약 무
	공 중 보 건	보 건	보 건
		식 품 위 생	식 품 위 생
환경연구	환 경	환 경	전 직 류
시설연구	토 목	시 설	일 반 토 목
	건 축		농 업 토 목
방재안전연구	안 전 관 리	방 재 안 전	건 축
	재 난 관 리		방 재 안 전

2. 지도직공무원

지	도	직	과	학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 촌 지 도	농	업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업 연 구	작	물	보	호	
				작	물	환	경	
				농	업	경	영	
				원	예			
				농 업 경 영	농 업 연 구	농 업 경 영		
		임	업	녹	지	전	직	류
				녹 지 연 구	임	업		
			조	경				
			잠	업	농 업 연 구	산	업	곤
	원	예	농 업 연 구	원	예			
	축	산	농	업	축	산		
			농 업 연 구	축	산			
	가	축 위 생	수	의	수	의		
			수 의 연 구	수	의			
	농 촌 사 회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농 업 기 계	공	업	농	업	기	계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업 토 목	시	설	농	업	토	목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촌 생 활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어 촌 지 도	어	촌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로			
			해 양 수 산 연 구	전	직	류		

[별표 17] <신설 2021. 3. 22.><개정 2024.11.18.>

교류직위 등 특정직위 근무경력 가산점(제26조의2 관련)

구분	부여 기준	가산점	비 고
중앙부처 파견 및 교류	파견(영 제27조의2제1항1호 ~3호, 6호) 및 인사교류(영 제27 조의5)에 임용된 5급 공무원 (단, 인천시 제외)	교류(파견) 임용 1년 경과 후 최초 교류(파견) 임용된 날부터 수도권(서울,경기) : 1개월 마다 0.02점 비수도권 : 1개월마다 0.05점	최대 1.2점
인천광역시 파견 및 교류	인사교류(영 제27조의5)에 임용된 5급 이하 공무원	교류(파견) 임용 1년 경과 후 최초 교류(파견)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1점	최대 0.36점
전문직위 근무경력	전문직위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 3년 초과 4년 이하 : 1개월 마다 0.02점 - 4년 초과 5년 이하 : 1개월 마다 0.025점 - 5년 초과 : 1개월 마다 0.03점	최대 1.2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이상 근무한 경력 (단, 대규모 재난 대응·복구 전담자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부터 부여)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담직위 지정 1년 경과 후 지정일부터 1개월 마다 0.01점	최대 0.5점
격무·기피 민원업무 근무경력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된 격무·기피 민원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	격무·기피관리 민원업무 전담직위 지정 지정일부터 1개월 마다 0.01점	최대 0.5점

※ 재난·안전 관련 법령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소하천정비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재해 구호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풍수해보험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3. 22., 2024.11.18.>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전자우편											복수국적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시표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00.00.>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 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00.00.>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험위원) ① ----- ----- ----- ----- ----- ----- 한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생략)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단서 신설> <후단 신설>	② ----- ----- ----- ----- -----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항번호 이동 2021. 3. 22.>

② 삭 제

③ (생 략)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③ (생 략)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 <단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과학기술직공무원 -----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
1]과 같다.

제26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①·②
(생략)

③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직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신설>

-----.

제26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업무 및
민원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업무--
-----.

제30조의2(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
사관리 우대) 영 제27조의7제4항제
2호에 따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전출제한기간에
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될 수 있다.

제32조(근속승진기간 단축) 영 제33
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7의 격무·기피 민원 업무
를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은 근
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
다.

2. 별표 17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
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은
근속승진기간을 2년 단축해야 한
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87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27조의7(전출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4년의 전출제한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②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출제한기간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시험의 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④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있다.

1.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2.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단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제31조의6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1. 자격증이 있는 경우

2.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5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면·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4년 이상(이하 “우대승진기간”이라 한다)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 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7., 2012. 2. 29., 2012. 9. 21., 2013. 11. 20., 2017. 3. 8., 2019. 6. 18.>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③ 우대승진기간 및 근속승진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고, 제33조제9항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개정 2011. 3. 7., 2011. 8. 22., 2013. 11. 20.>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8., 2014. 11. 19., 2017. 7. 26., 2019. 11. 5., 2020. 7. 28., 2024. 6. 27., 2026. 4. 7.>

1.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규제개혁 또는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1년
3.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2년
4. 제32조제2항제5호의2에 따른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1년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3. 17.] [대통령령 제36179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연구사나 지도사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제19조에 따른 경력평정점 3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 4. 28.>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거나,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6. 27., 2026. 3. 17.>

1. 자격증이 있는 경우
2. 섬·외딴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특수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
5.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7.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26. 6. 30.] [행정안전부령 제627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④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2. 영 제32조 제2항 제5호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3. 영 제32조 제2항 제5호의2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 제2항 제6호의2에 따라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

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①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임용권자는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6. 6. 30.] [행정안전부예규 제371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45조(근속승진 요건) ①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임용령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여 해당 계급에서 실제 근무하여야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야 하며,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 심의를 할 때에는 승진임용 배수범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임용령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

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다.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표창

2. 임용령 제32조제2항제5호의2에 따른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2026. 4 .3. 지방인사제도과-2842 개정]

구 분	현 행	개 선 안
■ 응시원서 상의 ‘탈모’ 용어 개정	▶ ‘모자 등을 쓰지 않은’의 의미로 응시원서 사진 부착란에 ‘탈모’ 용어 사용	▶ 중의적 의미를 가진 탈모 라는 용어 대신 ‘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이라는 표현으로 수정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자격증 가산 대상 직렬(류) 개선	▶ 신규임용시험 시 자격증 가산 대상 직렬(류)에 사회복지직·의료기술직 포함	▶ 자격증 가산 대상 직렬(류)에서 사회복지직·의료기술직 삭제 ※ 별표 7의4 개정
자격증 현행화	▶ 응시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자격증 규정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23,‘24,‘25)에 따른 자격증 통합 및 명칭 현행화 ※ 별표 5의2, 6, 7, 7의4 개정
경력경쟁 블라인드 요소 강화	▶ 지방공무원 공채·경채 면접시험 평정표에 생년 기재	▶ 지방공무원 공채·경채 면접시험 평정표에 생년 삭제 ※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 개정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별도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지방공무원 인사 및 평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자치안전행정국 총무과장 박진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의안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내 용	유	무
검토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08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재정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회계 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 중심 명칭으로

일괄전환 (안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1, 별표 6)

나. 재정합의기준 현실화(안 제6조제1항, 별표 6)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상향(2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2) 자금관리를 위한 1억 원 이상 지출업무 담당팀장 합의사항 명문화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우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송의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재무과 (본관 4층)
- 전화번호: 032-880-4144 (FAX 880-4854)

붙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2026-
번 호	

제출년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재정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회계 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 중심 명칭으로

일괄전환 (안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1, 별표 6)

나. 재정합의기준 현실화(안 제6조제1항, 별표 6)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상향(2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2) 자금관리를 위한 1억 원 이상 지출업무 담당팀장 합의사항 명문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14.(월) ~ 10. 5.(월)

2) 입법선행절차

가) 행정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다)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업무담당실·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회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 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구의회	제1관서		기타 관서· 임시 관서
			보 건 소	동	
회 계 책 임 관	회계업무담당국장	-	-	-	-
징 수 관	회계업무담당국장	의회사무국장	관서의 장	동장	관서의 장
분 입 징 수 관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	-
재 무 관	회계업무담당국장	의회사무국장	관서의 장	동장	-
분 입 재 무 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	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 괄 채 권 관 리 관	회계업무담당국장	-	-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관서의 장	동장	관서의 장
총 괄 부 채 관 리 관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관서의 장	-	-
총 괄 기 금 관 리 관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	-	-
기 금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	소관 과장	-	-
통 합 지 출 관	회계업무담당과장,	-	-	-	-
지 출 원	회계·재무·지출업무담 당	회계·재무·지출 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
수 입 금 출 납 원	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 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 담당	세무·재무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서무업무담당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업무 담당(자)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와의 공무원	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와의 공무원	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와의 공무원	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와의 공무원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별표 6]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6조 제1항 관련)

대상 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회계업무 담당국장	회계업무 담당과장	
공사계약, 토지매입과 관련된 경비	2억원 초과	3백만원 초과 2억원 이하	
용역 또는 물품 제조·구매	1억원 초과	3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50만원 이상	
민간위탁경비	-	5백만원 이상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	-	5백만원 이상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	5백만원 이상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5천만원 초과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그 밖의 경비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 건당 1억 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원활한 자금 관리를 위하여
지출업무 담당팀장의 합의를 받는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생략)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표 7의 구분에 의하여 <u>기획예산실장</u> 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 ----- -- <u>예산업무담당실·과장</u> ----- -----.
제7조(지출의 절차) ① (생략)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대해서는 <u>재무과장</u> 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 ----- <u>회계업무담당과장</u> ----- --. ----- ----- ----- ----- -----.
③ <u>재무과장</u> 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u>회계업무담당과장</u>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생략)
회 계 책 임 관	문화경제국장	
징 수 관	문화경제국장	
분 임 징 수 관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	
재 무 관	문화경제국장	
분 임 재 무 관	재무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 관 리 관	문화경제국장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총괄부채 관 리 관	기획예산실장	
부 채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총괄기금 관 리 관	기획예산실장	
기 금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통 합 지 출 관	재무과장	
	(생략)	

[별표 6]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제6조제1항 관련)

관련)

관 직 명	본 청	(생략)
회 계 책 임 관	회계업무담당국장	
징 수 관	회계업무담당국장	
분 임 징 수 관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	
재 무 관	회계업무담당국장	
분 임 재 무 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 관 리 관	회계업무담당국장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총괄부채 관 리 관	예산업무담당실·과장	
부 채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총괄기금 관 리 관	예산업무담당실·과장	
기 금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통 합 지 출 관	회계업무담당과장	
	(생략)	

[별표 6]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제6조제1항 관련)

대상 경비	합의대상금액		비 고
	문화경제 국장	재무 과장	
공사계약, 토지 매입과 관련된 경비	2억원 초과	2백만원 초과 2억원 이하	
용역 또는 물품 제조·구매	1억원 초과	2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생	략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대상 경비	합의대상금액		비 고
	회계업무 담당국장	회계업무 담당과장	
공사계약, 토지 매입과 관련된 경비	2억원 초과	3백만원 초과 2억원 이하	
용역 또는 물품 제조·구매	1억원 초과	3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생	략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건당 1억 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원활한 자금 관리를 위하여 지출업무 담당팀장의 합의를 받는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

4. 작성자: 문화경제국 재무과장 윤순정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재무과		
의안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 토 내 용	유	무
검토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0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1. 개정이유

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 작은도서관”의 정의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1호)

나. 사립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기준 정비(안 제4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 자치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처

가) 주소: (우 2218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남로 82(용현동)

용비도서관 3층 도서관운영팀

나) 전화번호: 032-728-6818

4. 붙임

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검토의견서 1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
----------	-------

제출년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1. 제안이유

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 작은도서관”의 정의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1호)

나. 사립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기준 정비(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도서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14.(월) ~ 10. 5.(월)

2) 입법선행절차

가) 행정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완료

다) 성별영향평가: 완료

라) 인권영향평가: 완료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도서관법」 제31조”를 “「도서관법」 제36조”로 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의 작은 도서관중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2. 3. (생략)	제2조(정의) ----- -----. 1. -----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 ----- 「도서관법」 제36조----- ----- --.
제4조(사립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기준) 사립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4. (생략)	제4조(사립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기준) -----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

4. 작성자: 자치안전행정국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관계법령 발췌사항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생 략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시설 기준

-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및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 다. 전문도서관(공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라. 병영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52.2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도서관자료 기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 2)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 1만5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5백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3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나.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는 것

다.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

-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 2)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 1만5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5백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3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 라. 전문도서관(공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만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갖출 것
- 마. 병영도서관: 1천5백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의안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내 용	유	무
검토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6 - 15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체납·독촉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1. 처분제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3. 처분대상:

성명	송달연월	고지번호	주소	위반대지위치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반송사유	비고
주*회사* 에*엔	2026. 1.	00033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대로*34번길 2*-1*, 엔*스빌* *03호(*안동)	주안동 2*0-5	무단용도변경	8,209,200	폐문부재	독촉
이*선	2026. 1.	0005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길*4번길 * (*안동)	주안동 3*9-4	무단증축	401,380	폐문부재	독촉
차*순	2026. 1.	0004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길*04번길 5-6, 1층(*안동)	주안동 1*8-4	무단증축	498,400	폐문부재	독촉
조*환	2026. 1.	00039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림로 *9* (도화동)	도화동 *0-*1	무단증축	59,850	폐문부재	독촉
고*녀	2026. 1.	00049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로*17번길 *1 (*안동)	주안동 *1*-1*	무단증축	258,300	폐문부재	독촉

성명	송달연월	고지번호	주소	위반대지위치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반송사유	비고
송*섭	2026. 1.	000393	경기도 안성시 *도읍 *도*로 7, 3층	주안동 *9*-5	무단증축	551,250	폐문부재	독촉
이*용	2026. 1.	00050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로 *8* (*안동)	주안동 *51*-4	무단증축	24,670	주소불명	독촉
이*성	2026. 1.	00047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홀*로6*9번길 1*, *02호(*안동,*윤*스트 빌)	주안동 *03-*, *02호	무단증축	92,400	폐문부재	독촉
이*호	2026. 1.	00053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천로 *6, *01호(*의동,*주파*빌 라)	송의동 *4*-1, 옥상	무단증축	1,027,680	수취인불명	독촉
장*녀	2026. 1.	00058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배로 *9*-1, 용*중*장식(*현동)	용현동 *4*-7	무단증축	264,600	폐문부재	독촉
이*덕	2026. 1.	00050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로 *8* (*안동)	주안동 *5*-14	무단증축	24,670	주소불명	독촉
가*자	2026. 1.	00043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홀*로*7*번길 2* (*안동)	주안동 1*6*-1*	무단증축	231,000	폐문부재	독촉
허*옥	2026. 1.	000417	인천광역시 서구 *라라*로 *7, 1*7동 1*0*호(*라동,*라 힐*스*임)	도화동 *4*-3, *1*3호	무단증축	535,500	폐문부재	독촉
최*구	2026. 1.	0005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리로*9번길 *2, *층(*의동)	주안동 *21-*, *01호	무단증축	329,760	폐문부재	독촉
설*진	2026. 1.	00039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로2*7번길 *3-*2, *02호(*학동)	문학동 *5*-5	무단증축	323,400	폐문부재	독촉

성명	송달연월	고지번호	주소	위반대지위치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반송사유	비고
양*선	2026. 1.	00038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로*54번길 *8 (*안동)	주안동 *96-*5	무단증축	142,800	폐문부재	독촉
신*자	2026. 1.	000027	인천광역시 연수구 *드*크로 *9, *09동 1*0*호(*도동,*도 S* V*E*)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5-*0, 2층	무단증축	443,100	폐문부재	독촉
장*자	2026. 1.	00050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로 *9*, *동 *09호(*안동,*용주*아 파트)	주안동 *3*3	무단증축	750,310	폐문부재	독촉
최*화	2026. 1.	00047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대로*2*번길 *7, *층 *0*호(*안동,*이*캐슬)	주안동 1*7*-*0, 502호	무단증축	720,300	폐문부재	독촉
채*찬	2026. 1.	0005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로*5번길 *9-*5, *01호(*안동)	주안동 *6*9	무단증축	42,080	폐문부재	독촉
이*우	2026. 1.	00059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길 *7*, *01호(*학동,*우*버빌)	문학동 *04-*4, *01호	무단증축	350,350	폐문부재	독촉
조*숙	2026. 1.	00002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섬*로*9번길 *9-*7, *02호(*현동,*인*트빌)	용현동 *28-*2, 1*5호	무단증축	3,927,000	폐문부재	독촉
*하	2026. 1.	00043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봉로*3번길 *1*-*1* (*화동)	도화동 *24-*4*	무단증축	53,200	폐문부재	독촉
윤*욱	2026. 1.	000402	인천광역시 서구 *고개로*0*번길 *9, *06동 *01호(*좌동,진주아파 트)	주안동 *9*5	무단증축	366,520	폐문부재	독촉
이*완	2026. 1.	00003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로*4번길 * (*익동)	학익동 *22-*1	무단증축	287,000	폐문부재	독촉

성명	송달연월	고지번호	주소	위반대지위치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반송사유	비고
한*조	2026. 1.	0000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 3동 *03호(*의동,*물*아파 트)	주안동 *27-*5, 10*호	무단증축	182,700	폐문부재	독촉
이*훈	2026. 1.	0004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로*8번길 *5-*0, *층(주안동)	주안동 *8-*2	무단증축	582,400	폐문부재	독촉
황*민	2026. 1.	00005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룡길*1번길 *2, *01호(*현동,조*빌라)	용현동 *2-*4	무단증축	2,830,800	폐문부재	독촉
김*안	2026. 1.	00008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로*50번길 *1 (문학동)	문학동 *0-*1	무단증축	2,515,450	폐문부재	독촉
서*범	2026. 1.	00004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대로*75번길 *01, *02호(주안동)	주안동 1*20-*1, *02호	무단증축	82,680	폐문부재	독촉
박*호	2026. 1.	00045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로*80번길 *1 (주안동)	주안동 *21-*8	무단증축	43,220	폐문부재	독촉
황*경	2026. 1.	00045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로*길 *5, *01동 *00*호(*인동,*인역 e-*한*상 *단지)	주안동 *7*-4, *01호	무단용도변경	6,781,800	폐문부재	독촉
박*민	2026. 1.	00054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로*30번길 *5, 1동 *06호(*교동,*아아파 트)	학익동 *83-*8 외 *필지	무단증축	453,600	폐문부재	독촉
권*현	2026. 1.	000460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로27길 *0, 1동 *10호(*로동)	주안동 *7*-4(*안로*05번길 *7), *01호	무단용도변경	6,781,800	폐문부재	독촉
김*균	2026. 1.	000003	경기도 화성시 *점로 *9, *동 2*3호(*안동)	주안동 *9-*9, *01호	무단증축	82,770	수취인불명	독촉

성명	송달연월	고지번호	주소	위반대지위치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반송사유	비고
윤*현	2026. 1.	000521	인천광역시 연수구 *말로*번길 *6, *층호(*수동)	주안동 *2*-3, *02호	무단증축	38,500	폐문부재	독촉
김*지	2026. 1.	0005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로 *3-*, *02호(*암동)	주안동 *0*-2, *01호	무단증축	111,560	수취인불명	독촉
조*현	2026. 1.	0004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로*9*번길 *9, *층(주안동)	주안동 *53*-2	무단증축	456,750	폐문부재	독촉
김*욱	2026. 1.	000587	인천광역시 서구 *들로 *3, 10*동 *5*1호(*석동, *암역로* 파크*티푸*지오*단지)	관교동 *94*-6 외 *필지	무단증축	3,598,700	폐문부재	독촉
김*욱	2026. 1.	000588	인천광역시 서구 *들로 *3, 10*동 *50*호(*석동, *암역로* 파크*티푸*지오*단지)	관교동 *94*-6 외 *필지	무단증축	302,400	폐문부재	독촉
고*성	2026. 1.	00047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로*6번길 *2, *01호(*안동, *다주택)	주안동 1*8*-7, *01호	무단증축	300,300	폐문부재	독촉
지*숙	2026. 4.	00048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로 *6*-10 *02동 *02호(*산동, 산*마을)	주안동 *30*-2, *01호	무단용도변경	9,275,640	폐문부재	독촉
김*욱	2026. 4.	00018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원대로*5*번길 5-*7, *01호 (관교동)	관교동 *9*-3	무단증축	541,800	폐문부재	독촉
김*욱	2026. 4.	00063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추홀*로6*9번길 *6 (주안동)	주안동 *0*-4 외 *필지	무단증축	162,300	폐문부재	독촉
문*욱	2026. 4.	00065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로*4번길 3*-1* *층(송의동)	송의동 *8*-28	무단증축	10,930	폐문부재	독촉

성명	송달연월	고지번호	주소	위반대지위치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반송사유	비고
문*윤	2026. 4.	00063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봉남로*8번길 *5 (용현동)	용현동 1*6-*56	무단증축	215,770	폐문부재	독촉
오*채	2026. 4.	0006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로3*번길 3*-8 *02호(*의동,해*솔)	송의동 1*4-2, *02호	무단증축	1,128,290	폐문부재	독촉
장*규	2026. 4.	0006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추로 *6 (송의동)	송의동 *58-*2	무단증축	700,000	폐문부재	독촉
주*회사더 *디*씨	2026. 4.	00000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골로 *8-*9 *층(*산동)	사건번호 20*5*확1*3*2 *송비*액*정	소송비용액	24,782,800	폐문부재	독촉
김*덕	2026. 4.	0000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로 *16 *02호(*화동)	도화동 *3*-8	무단증축	10,930	폐문부재	독촉
주*회사* 피하*징	2026. 4.	000014	인천광역시 부평구 *선로*번길 * 무*레뷰 *층 20*호(*평동,무*레뷰)	주안동 2*6-6, *01호	무단증축	18,730	수취인불명	독촉
JI* Y*A*DE	2026. 4.	0000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로*80번길 *9 *01동 *01호(*안동,세*그린 빌)	주안동 *03-*, *02호	무단증축	207,360	폐문부재	독촉
손*영	2026. 4.	00002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로 *03 *02동 *02호(*안동,지*에스* 이트)	주안동 *20-*	무단증축	329,430	폐문부재	독촉
조*철	2026. 4.	00004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로*18번길 *6 *동 *01호(*안동,월*맨션)	주안동 *2*7-6, *01호	무단증축	90,280	폐문부재	독촉
나*지	2026. 4.	00004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봉로*3번길 *8-*0 (*의동)	송의동 1-*9*	무단증축	52,500	폐문부재	독촉

성명	송달연월	고지번호	주소	위반대지위치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반송사유	비고
김*배	2026. 4.	000051	인천광역시 중구 *현로*0번길 *7-*5 *02호 *층(답동)	주안동 *49-* *01호	무단증축	2,362,500	폐문부재	독촉
박*호	2026. 4.	000268	경기도 시흥시 *인로3*12번길 *6, *07동 4*0*호(*야동, *흥센*럴푸*지오)	도화동 *9*-1	무단증축	1,864,800	폐문부재	독촉(분납)
(주)에*엠* 크*아	2026. 4.	00030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대로*3번길 *4, *층(*화동)	도화동 *69-*	무단증축	684,320	폐문부재	독촉(분납)
임*희	2026. 4.	0003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배로*7*번길 *7-*8, *02호(*현동, *성*라)	용현동 *6*-15	무단증축	327,070	폐문부재	독촉(분납)
이*미	2026. 4.	0001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로*18번길 *1-*5, *01호(*안동)	주안동 *16*-9*	무단증축	347,760	폐문부재	독촉(분납)
김*태	2026. 4.	00033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리로*00번길 *, *03호(*의동, 세*하이*빌라)	송의동 1*3-* 외 *필지, *03호	무단증축	163,800	폐문부재	독촉(분납)

4. 공고기간 : 2026. 9. 11. ~ 2026. 9. 26. (15일간)

5. 게시장소 : 미추홀구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제80조 제7항에 의거 체납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건축과(☎ 032-880-4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13호

취득세 과세예고 공시송달 공고

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제 목: 취득세 과세예고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2026. 9. 14. ~ 2026. 9. 29.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이*옥 등 39인 (붙임참조)
4. 공시송달내용
 - 가.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 나.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세무1과 취득세팀 (☎ 032-880-4170)

부동산 취득세 과세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연번	과세번호	납세자명	발송주소	세액	반송사유
1	28177-101501-202611-2-640-000621	이*옥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244번길 5*, *층 (괴정동)	859,4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2	28177-101501-202611-2-670-000624	서*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안신기4길 * (가곡동)	5,083,5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3	28177-101501-202611-2-670-000624	서*석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남로 9*, 10*동 90*호 (정왕동,금*펜테리움 오*베이)	5,083,5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4	28177-101501-202611-2-670-000624	최*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7길 5*, 10*동 40*호 (대치동,스톤빌리지 *자)	5,083,5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5	28177-101501-202611-2-670-000624	최*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7길 5*, 10*동 40*호 (대치동,스톤빌리지 *자)	5,083,5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6	28177-101501-202611-2-670-000623	서*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안신기4길 * (가곡동)	14,839,7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7	28177-101501-202611-2-670-000623	서*석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남로 9*, 10*동 90*호 (정왕동,금*펜테리움 오*베이)	14,839,7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8	28177-101501-202611-2-670-000623	최*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7길 5*, 10*동 40*호 (대치동,스톤빌리지 *자)	14,839,7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9	28177-101501-202611-2-670-000623	최*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7길 5*, 10*동 40*호 (대치동,스톤빌리지 *자)	14,839,7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10	28177-101501-202611-2-640-000620	문*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14길 42-2*, *01호 (성내동, 올*픽하*빌)	859,4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11	28177-101501-202611-2-640-000620	이*옥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244번길 5*, *층 (괴정동)	859,4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12	28177-101501-202611-2-550-000619	이*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7가길 3*, 10*동 140*호 (장안동,동대문 더*스트 데*앙)	2,285,8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13	28177-101501-202611-2-510-000622	이*선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539길 1*, 10*동 20*호 (삼우정*타운)	1,126,1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14	28177-101501-202611-2-510-000622	이*비	인천광역시 검단군 한울로 33, 11*동 70*호 (백석동, 검암역로*파크씨티푸르지오*단지)	1,126,1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15	28177-101501-202611-2-640-000621	문*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14길 42-2*, *01호 (성내동, 올*픽하*빌)	859,4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16	28177-101501-202611-2-600-000616	최*철	대구광역시 북구 학남로15길 *, *층 (국우동)	3,539,2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17	28177-101501-202611-2-600-000616	최*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화원로3길 6*, 10*동 110*호 (화원역태*리더스)	3,539,2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18	28177-101501-202611-2-600-000616	황*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309번길 3*, 10*동 240*호 (학익동,엑*루타워)	3,539,2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19	28177-101501-202611-2-600-000616	최*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309번길 3*, 10*동 240*호 (학익동,엑*루타워)	3,539,2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20	28177-101501-202611-2-600-000616	최*남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4*, 10*동 70*호 (효동동,효목우*맨션)	3,539,2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21	28177-101501-202611-2-600-000612	차*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일로 3*, 110*호 (도화동, 삼라*이다스)	7,640,7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22	28177-101501-202611-2-600-000612	박*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일로 3*, 110*호 (도화동, 삼라*이다스)	7,640,7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23	28177-101501-202611-2-600-000612	차*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길70번길 *, *동 20*호 (문학동,THE 채*)	7,640,7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24	28177-101501-202611-2-600-000612	차*은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귀여리길 14-*, 10*호	7,640,7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25	28177-101501-202611-2-650-000613	전*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780번길 2*, 10*동 140*호 (주안동,주안*슬&더*에듀프레)	10,314,8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26	28177-101501-202611-2-610-000611	황*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302번길 2*, 가동 10*호 (도화동,신*앙아파트)	3,145,3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27	28177-101501-202611-2-610-000611	조*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302번길 2*, 가동 10*호 (도화동,신*앙아파트)	3,145,3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28	28177-101501-202611-2-610-000611	조*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302번길 2*, 가동 10*호 (도화동,신*앙아파트)	3,145,3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29	28177-101501-202611-2-540-000615	진*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1*, D동 10*호 *층 (남촌동, 협*빌라)	1,652,9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30	28177-101501-202611-2-570-000610	김*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687-*, 우*그린빌 10*동 20*호 (9통8반)	2,509,9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31	28177-101501-202611-2-570-000610	김*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5번길 1*, 20*호 (청학동)	2,509,9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32	28177-101501-202611-2-540-000608	현*수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공시길 17-1*	828,8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33	28177-101501-202611-2-540-000608	박*완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187번길 *, 20*호	828,8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34	28177-101501-202611-2-560-000607	조*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 1*, 510*동 100*호 (다산동,편한세상 다산)	1,061,1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35	28177-101501-202611-2-560-000607	이*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39*.* (용현동)	1,061,1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36	28177-101501-202611-2-620-000609	서*심	인천광역시 서해군 봉오재로 4*, 80*동 20*호 (신현동, 루원시티루*블리)	3,633,2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37	28177-101501-202611-2-620-000609	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9*, *동 100*호 (주안동,현*아파트)	3,633,2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38	28177-101501-202611-2-620-000609	서*주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3*, 20*동 90*호 (탕정삼성*라팔리스)	3,633,2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39	28177-101501-202611-2-620-000609	서*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시청로 7*, 20*동 100*호 (불당동,동*하이빌)	3,633,2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